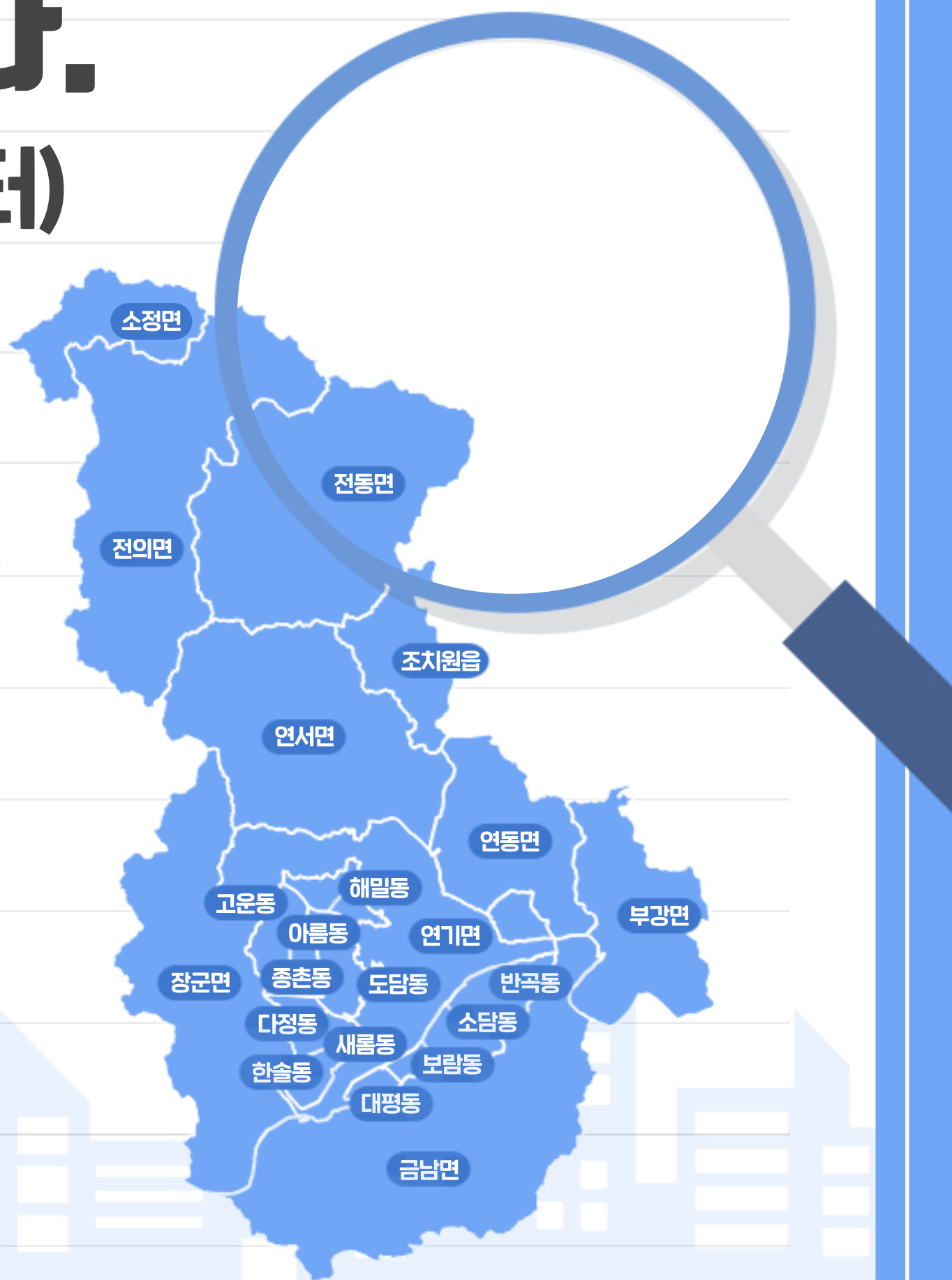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새해부터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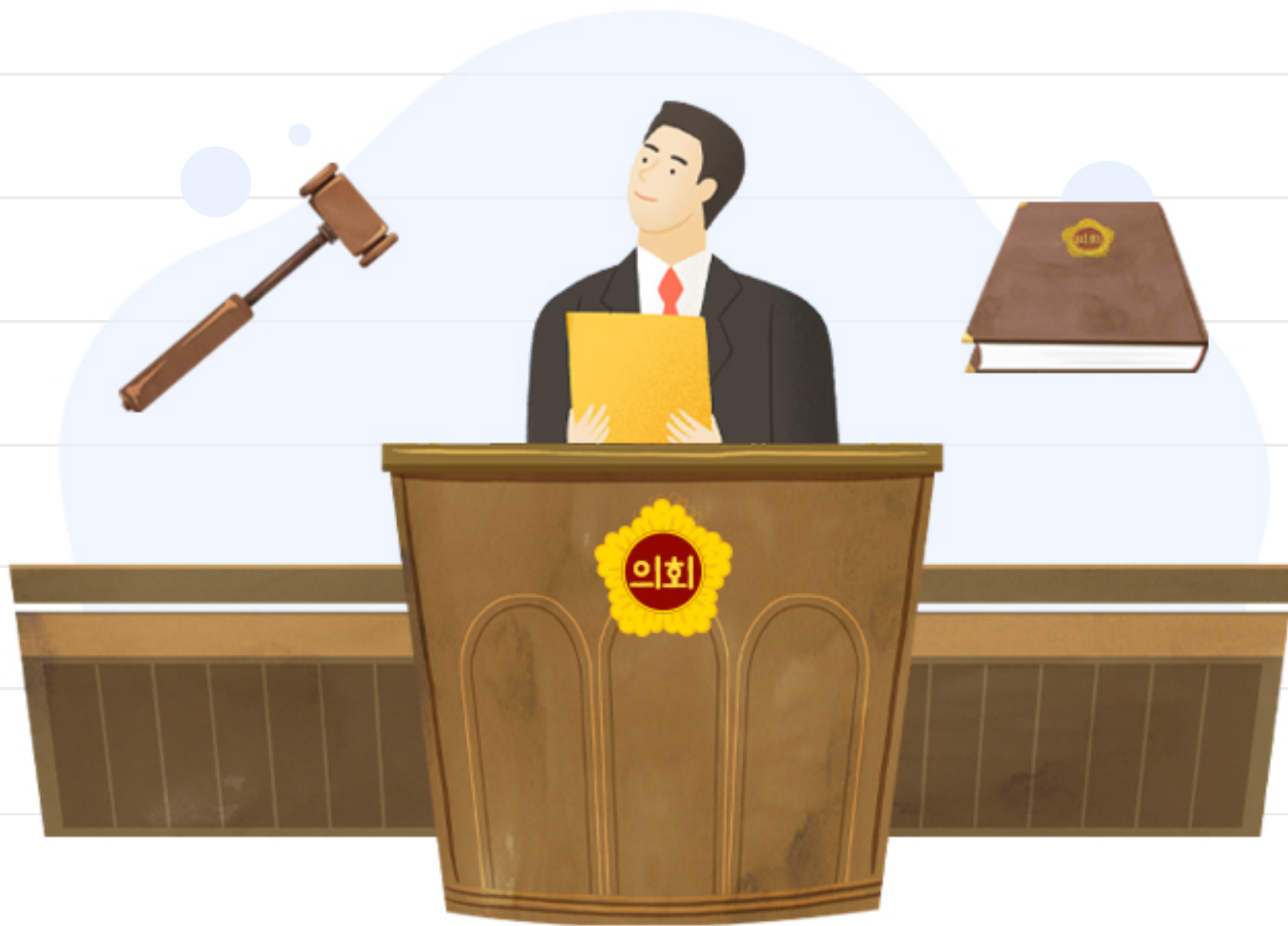
달라집니다.

(2022.1.13.부터)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자치법 제41조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원정수 1/2범위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 전문인력 충원
(2023년까지 단계적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

지방의회 운영 자율성 제고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



정례회



임시회



의안의 발의

지방의회 운영자율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22.1.13. 시행

정례회, 임시회 소집과 의안의 발의 관련
사항이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

지방의회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 ✓ **지방자치 정보공개확대(지방자치법 제26조)**
의회 의정활동 등 정보공개 신설
- ✓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지방자치법 제43조)**
겸직금지 대상 구체화, 겸직 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
- ✓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지방자치법 제65조)**
윤리특위 및 윤리심사 자문위 설치 의무화
- ✓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지방자치법 제74조)**
기록표결제도 도입
- ✓ **조례 입법평가 제도 도입(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성 분석·평가

주민주권 구현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시작됩니다.



주민조례 발안제 시행
(2022.1.13.)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
(18세 이상)

- ✓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2022.1.13. 시행)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 개·폐 청구가 가능
- ✓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동법 제2조)
(19세 이상 → 18세 이상으로 낮춤)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맞아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한발 더 가까이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